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25. 07. 25.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ASSITEJ Korea)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

2000. 04. 18 제정

2009. 12. 22 개정

2014. 09. 22 개정

2022. 05. 27 개정

2025. 07.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이하‘본부’라고 한다.)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 제2조에 의거 광역시, 도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5.27., 2025.07.25.›

제2조(소재지)

지회는 광역시, 도 지역에 소재지를 둔다. <개정 2009.12.22., 2022.05.27.›

제3조(지회 설치 및 취소)

- ① 지회는 회원자격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에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설치한다. 단, 회원단체는 5개 단체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4.9.22., 2022.05.27., 2025.07.25.›
- ② 지회 운영에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본부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2., 2014.9.22.›
- ③ ②항에서 언급한 현저한 하자는 4조 및 5조에 근거한다. <개정 2009.12.22., 2014.9.22., 2022.05.27.›
- ④ <개정 2009.12.22.› <삭제 2014.9.22.›

제2장 구 성

제4조(지회 구성) <삭제 2009.12.22.› <개정 2022.05.27., 2025.07.25.›

지회는 해당지역에 활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 ① 지회 회원은 본부 및 지회 운영 발전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정 2009.12.22., 2014.9.22>
- ② 지회는 본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그리고 업무의 진행사항 및 지회 회원 단체의 활동 사항 등을 매년 1월 마지막 날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4.9.22., 2025.07.25.>
- ③ 본부는 회원(개인, 단체)의 입회 및 탈퇴 등을 직접 관리하며, 지회는 이에 협조한다. <신설 2009.12.22., 2025.07.25.>
- ④ 지회 회원은 본부에 직접 회비를 납부하고, 본부는 그중 70%를 지회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2., 2014.9.22., 2025.07.25.>

제3장 운영

제6조(임원 구성) <개정 2025.07.25>

- ① 지회에는 지회장 1인, 부지회장 2인 이내, 이사 8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며,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9.12.22., 2014.9.22., 2022.05.27>
- ② <삭제 2014.9.22>
- ③ 지회 총회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22>
- ④ 지회는 선출된 임원명단을 선출 후 1개월 이내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설 2009.12.22.> <개정 2014.9.22., 2025.07.25.>

제7조(임원 임기) <개정 2025.07.25>

지회 임원의 임기는 본부 임원의 임기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9.22., 2025.07.25.>

제8조(임원 자격) <개정 2025.07.25>

지회 임원의 자격은 본부 회원관리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5.07.25.>

제9조(사무국) <개정 2025.07.25>

- ①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2.>
- ② <삭제 2009.12.22.>

제10조(신규 지회 설치) <삭제 2014.9.22.><개정 2022.05.27., 2025.07.25.›

신규로 지회를 설치 하고자 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본부 이사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공문) 1부
2. 추천서 (본부 이사 2인 이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연간) 1부
4. 지회 인감 대장 1부 (법인단체에 한함)
5. 임원 및 회원 명부 1부
6. 지회 정관 1부
7. 지회 결성 총회 회의록 1부
8. 임원의 경력 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9. 해당 지역 연극 활동 연혁 1부
10. 임원 취임 승낙서 각 1부

제11조(정관 변경 인준) <신설 2022.05.27>

지회의 정관 변경은 지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2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본부 정관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본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0년 04월 18일 이사회 의결
2. 2009년 12월 22일 이사회 의결
3. 2014년 09월 22일 이사회 의결
4. 2022년 05월 27일 이사회 의결
5. 2025년 07월 25일 이사회 의결